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2026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1
가. 세입예산안	1
나. 세출예산안	1
(1) 총 괄	1
(2) 프로그램별 예산안 내역	2
(3) 사업 내역	3
(4) 성과계획서	3
(가) 임무와 비전	3
(나) 목표 및 과제 현황	4
(5) 성인지예산	5
(6)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5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6
가. 2026년도 신규사업	6
나. 2025년도 완료사업	6

Ⅱ.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7
가. 개요	7
나.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 활동기한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8
2. 이태원참사 진상규명(1131-310)	15
가. 개요	15
나. 국외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조사 계획 재검토 필요	16
3. 안전사회 구현(1131-320)	22
가. 개요	22
나. 연구용역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및 내실화 도모 필요	23
4. 기관운영(총액)(7002-200)	28
가. 개요	28
나. 1인당 특정업무경비 지급단가 현실화를 위한 증액 필요	28

I .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라 함) 소관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예산안

(1) 총괄

2026년도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32억 5,1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8억 5,100만원(6.4%)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2026년도에는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본예산	추경	예비비(A)			
계	-	-	12,400	13,251	851	6.4
o 일반회계	-	-	12,400	13,251	851	6.4
- 운영비(사업비)	-	-	2,165	2,860	695	32.1
- 인건비	-	-	4,183	4,707	524	12.5
- 기본경비	-	-	6,052	5,684	△368	△6.1

※ 2025년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됨(2025. 1.15.).

내역별로 보면, 사업비는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18억 5,300만원,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위해 2억 9,300만원, 위원회 활동을 대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4억 6,400만원, 기록물을 수립 및 정리하기 위해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도 예산 대비 6억 9,500만원이 증액(32.1%)된 2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인건비는 임금 평균 단가 상승에 따라 2025년도 예산 대비 5억 2,400만원이 증액(12.5%)된 47억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감액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비비 대비 3억 6,800만원이 감액(△6.1%)된 56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 프로그램별 예산안 내역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프로그램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프로그램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	예비비 (A)		(B-A)	%
총 계		-	-	12,400	13,251	851	6.4
일반·지방행정(분야)		-	-	12,400	13,251	851	6.4
일반 행정 (부문)	소 계	-	-	12,400	13,251	851	6.4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	-	-	2,164	2,860	696	32.2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 행정지원	-	-	10,236	10,391	155	1.5

※ 2025년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됨(2025. 1.15.).

(3) 사업 내역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3개 단위 사업과 7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부사업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	예비비(A)		(B-A)	%
총 계		-	-	12,400	13,251	851	6.4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	-	2,164	2,860	696	32.2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	-	1,161	1,853	692	59.6
	안전사회 구현	-	-	285	293	8	2.8
	대외협력	-	-	479	464	△15	△3.1
	기록관리	-	-	239	250	11	4.6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건비		-	-	4,182	4,707	525	12.6
	인건비	-	-	4,182	4,707	525	12.6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본경비		-	-	6,054	5,684	△370	△6.1
	기관운영(총액)	-	-	1,240	1,421	181	14.6
	기관운영	-	-	4,814	4,263	△551	△11.4

※ 2025년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됨(2025. 1.15.).

(4) 성과계획서

(가) 임무와 비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26년도 임무로 ‘10·29이태원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확립’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음.

임무와 비전

□ 임무(Mission)

10·29이태원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 및 연구를 통해 10·29이태원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 규명
- 피해자 권리침해 조사 및 연구를 통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
- 재난안전 조사 및 연구를 통해 향후 유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비전(Vision)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확립

-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對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신뢰 회복을 통한 공동체 회복 도모
- 진상규명조사 및 연구를 통해 국가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

(나) 목표 및 과제 현황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가지 전략목표(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적극적으로 규명한다)와 1개의 프로그램 목표(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문적 조사·연구를 통해 진상규명에 기여한다)를 설정하였음. 해당 프로그램 목표에 설정된 단위사업은 1개임.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1	1	1	4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전략목표 I.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적극적으로 규명한다.	
I -1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문적 조사·연구를 통해 진상규명에 기여한다.

(5) 성인지예산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6)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가. 2026년도 신규사업

2025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므로, 2026년도 예산은 모두 신규사업에 해당함. 사업비로는 이태원참사 국내·외조사 및 종합보고서 발간 등을 위해 18억 5,300만원,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재난안전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해 2억 9,300만원, 대외홍보를 위해 4억 6,400만원, 기록관리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 외 직원 인건비로 47억 700만원과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음.

나. 2025년도 완료사업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025년도 완료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 특별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근거하여 활동기한이 원칙적으로 2026년 6월 16일까지이고, 특별조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활동기간을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별도의 의결이 없었음에도 2026년 예산안 산출내역을 9~12개월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법률 상 위원회 활동기한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2026년도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출예산안은 132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4억원 대비 8억 5,100만원(6.4%)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본예산	추경	예비비(A)			
계	-	-	12,400	13,251	851	6.4
○ 일반회계	-	-	12,400	13,251	851	6.4
- 운영비(사업비)	-	-	2,165	2,860	695	32.1
- 인건비	-	-	4,183	4,707	524	12.5
- 기본경비	-	-	6,052	5,684	△368	△6.1

※ 2025년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됨(2025. 1.15.).

나.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 활동기한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년 6월 17일 제27차 위원회 회의에서 최초 조사개시를 결정하였고¹⁾,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동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원칙적으로 2026년 6월 16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됨.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상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다만,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결로서 ①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 ②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해 3개월 이내에서 각각 한 차례씩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2025년 9월 3일까지 특별조사위원회

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7조(조사의 개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에서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별도의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안 산출내역은 2026년 활동기간 6개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을 9~12개월로 예정하여 예산안 산출내역을 작성하였음.

- 예를 들어, 세부사업 ‘이태원참사 진상규명(1131-310)’의 경우, 조사활동과 관련된 운영비(사업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9개월 또는 12개월을 세부 산출내역의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세부사업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예산안 산출내역]

2026년 예산요구안 : 1,853,000천 원
산출내역
○ 일반수용비(210-01) : 880,000천 원 1. 진상규명 현장조사 운영비 : 30,000원*10회*<u>9월</u>=3,000천 원 2. 전문가 감정 : 300,000원*50회*<u>9월</u>=135,000천 원 3. 외국인 피해자 관련 통번역 등 가. 통역비 : 300,000원*9회*9개국=24,000천 원 나. 자료 번역료 : 30,000원*150장*9개국=41,000천 원 다. 해외자료조사 및 전문가 자문 : 300,000원*12명*9개국=32,000천 원 4. 증인 등 협조자 주차요금 : 3,000원*3시간*30명*<u>9월</u>=2,000천 원 5. 진상규명 청문회 참석수당 : 500,000원*6명*2회=6,000천 원 6. 세미나, 공청회 개최 가. 자료수집 및 제본 : 3,500,000원*9회=32,000천 원 나. 원고료 및 전문가 참석 수당 : 1,000,000원*4명*9회=36,000천 원 7. 진상규명 관계자 간담회 가. 간담회 물품 구입 : 20,000원*40명*4회*<u>9월</u>=29,000천 원 나. 참석자 주차지원 : 3,000원*3시간*20명*2회*<u>9월</u>=3,000천 원 다. 간담회 자료 인쇄 : 15,000원*35부*4회*<u>9월</u>=19,000천 원 8. 종합보고서 작성(원고 집필) 가. 원고료 : 4,500,000원*5명=23,000천 원 나. 회의 참석 수당 : 200,000원*10명*5회=10,000천 원 다. 원고 심의 수당 : 200,000원*4명*3회=2,400천 원 9. 종합보고서 및 백서 발간 : 3,000원*161식*1000질=483,000천 원

2026년 예산요구안 : 1,853,000천 원	
산출내역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8,000천 원	
1. 우편물 발송비 : 300,000원*2회*9월=6,000천 원	
2. 국제우편물 발송비 : 30,000원*80회=2,000천 원	
○ 임차료(210-07) : 47,000천 원	
1. 조사업무수행 차량 : 500,000원*7대*9월=32,000천 원	
2. 조사장비 임차	
가. 노트북 : 60,000원*11대*9월=6,000천 원	
나. 휴대용 프린터 : 20,000원*11대*9월=2,000천 원	
다. 소형 녹음기 : 10,000원*15대*9월=1,000천 원	
라. 세단기 : 80,000원*6대*12월=6,000천 원	
○ 유류비(210-08) : 14,000천 원	
1. 조사차량: 1,7966대*1,163리터*7대=14,000천 원	
○ 국내여비(220-01) : 251,000천 원	
1. 이태원참사 관계자 조사	
가. 관내 여비	
1) 일비 : 25,000원*30명*7일*9월=47,000천 원	
2) 식비 : 25,000원*30명*7일*9월=46,000천 원	
나. 관외 여비	
1) 일비 : 25,000원*25명*2일*3회*9월=34,000천 원	
2) 식비 : 25,000원*25명*2일*3회*9월=34,000천 원	
3) 교통비 : 50,000원*25명*3회*9월=34,000천 원	
4) 숙박비 : 80,000원*25명*3회*9월=54,000천 원	
2. 조사 간담회 운영지원 교통비 : 20,000원*9명*9회=2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06,000천 원	
1. 국외거주 면담조사(9개국)	
가. 항공운임 : 4,769,000원*3명*9회=129,000천 원	
나. 일비 : 67,500원*5일*3명*9회=9,000천 원	
다. 식비 : 117,450원*5일*3명*9회=16,000천 원	
라. 숙박비 : 290,250원*4일*3명*9회=31,000천 원	
마. 준비금 : 202,500원*3명*9회=5,000천 원	
바. 예비비(항공취소 수수료 등, 총액 약 8%)=16,000천 원	
○ 사업추진비(240-01) : 32,000천 원	
1. 이태원참사 사고조사 간담회 : 50,000원*30명*2회*9월=27,000천 원	
2. 국외거주 피해자 현지 조사	
가. 국외거주 피해자 조사 활동비(간담회비 포함) : 2,000,000원*1회=2,000천 원	

2026년 예산요구안 : 1,853,000천 원
산출내역
나. 국외거주 피해자조사 통역 및 전문가 사례비 : 1,000,000*3회=3,000천 원 ○일반연구비(260-01) : 200,000천 원 이태원참사 시뮬레이션 기반 진상규명 연구 : 200,000,000원*1회=200,000천 원 ○보상금(310-03) : 130,000천 원 1. 진상규명 기여자 보상금 가. 중요 진술 및 중요자료 수집 : 20,000,000원*4건=80,000천 원 나. 중요 제보 및 특수자료 수집 : 10,000,000원*5건=50,000천 원 ○기타보전금(310-04) : 85,000천 원 1. 증인 등의 비용 가. 증인 등이 조사를 위해 출석한 경우 : 50,000원*1000명=50,000천 원 나. 증인 등의 조사가 장시간 소요된 경우 : 50,000원*500명=25,000원 다. 증인 등의 선물 : 20,000원*500개=10,000원

□ 또한, 인건비의 경우에는 보수(110-01) 비목에 대해 모든 내역을 12개월 기준으로 산출하였는데, 법률 상 사무처의 존속기한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까지임을 고려하여도²⁾, 특별조사위원회의 별도 의결이 없는 현 시점에서는 9개월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조사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인건비 - 보수(110-01) 비목 예산안 산출내역]

2026년 예산요구안 : 4,675,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보급	1) 정무직 · 장관(급) 12,474,300원*1명* <u>12월</u> *1.0397= 155,634천 원 · 차관(급) 12,114,800원*2명* <u>12월</u> *1.0397= 302,298천 원 2) 별정직 (연봉제) · 고위공무원 10,463,523원*3명* <u>12월</u> *1.07*1.0397= 419,056천 원 · 4급상당 6,451,733원*6명* <u>12월</u> *1.07*1.0397= 516,774천 원 · 5급상당 5,044,849원*11명* <u>12월</u> *1.07*1.0397= 740,822천 원 (월급제) · 6급상당 3,251,300원*26명* <u>12월</u> *1.0397= 1,054,678천 원 · 7급상당 2,516,620원*13명* <u>12월</u> *1.0397= 408,179천 원	
명절휴가비	· 6급상당 3,251,300원*26명*0.6*2회*1.0397= 105,468천 원 · 7급상당 2,516,620원*13명*0.6*2회*1.0397= 40,818천 원	
정근수당	· 6급상당 3,251,300원*26명*1회*0.58*1.0397= 50,976천 원 · 7급상당 2,516,620원*13명*1회*0.33*1.0397= 11,225천 원	
정근수당가산금	· 6급상당 55,238원*26명* <u>12월</u> = 17,234천 원 · 7급상당 30,000원*13명* <u>12월</u> = 4,680천 원	
성과상여금	· 6급상당 4,090,900원*26명*1.10= 117,000천 원 · 7급상당 3,478,200원*13명*1.10= 49,738천 원	
가족수당	· 장관(급) 60,000원*1명* <u>12회</u> = 720천 원 · 차관(급) 60,000원*2명* <u>12회</u> = 1,440천 원 · 고위공무원 60,000원*3명* <u>12회</u> = 2,160천 원 · 4급상당 60,000원*6명* <u>12회</u> = 4,320천 원 · 5급상당 90,000원*11명* <u>12회</u> = 11,880천 원 · 6급상당 90,000원*26명* <u>12회</u> = 28,080천 원 · 7급상당 90,000원*13명* <u>12회</u> = 14,040천 원	
시간외수당	· 5급상당 15,510원*32시간*11명* <u>12월</u> *1.0397= 68,115천 원 · 6급상당 13,229원*32시간*26명* <u>12월</u> *1.0397= 137,322천 원 · 7급상당 11,950원*32시간*13명* <u>12월</u> *1.0397= 62,023천 원	
정액급식비	· 장관(급) 140,000원*1명* <u>12회</u> = 1,680천 원 · 차관(급) 140,000원*2명* <u>12회</u> = 3,360천 원 · 고위공무원 140,000원*3명* <u>12회</u> = 5,040천 원 · 4급상당 140,000원*6명* <u>12회</u> = 10,080천 원 · 5급상당 140,000원*11명* <u>12회</u> = 18,480천 원	

2026년 예산요구안 : 4,675,000천 원	
구 분	산출내역
	· 6급상당 140,000원*26명*<u>12회</u> = 43,680천 원 · 7급상당 140,000원*13명*<u>12회</u> = 21,840천 원
직급보조비	· 정무직(장관급) 1,240,000원*1명*<u>12월</u> = 14,880천 원 · 정무직(차관급) 950,000원*2명*<u>12월</u> = 22,800천 원 · 고위공무원(가급) 750,000원*1명*<u>12월</u> = 9,000천 원 · 고위공무원(나급) 650,000원*2명*<u>12월</u> = 15,600천 원 · 4급상당 400,000원*6명*<u>12월</u> = 28,800천 원 · 5급상당 250,000원*11명*<u>12월</u> = 33,000천 원 · 6급상당 185,000원*26명*<u>12월</u> = 57,720천 원 · 7급상당 180,000원*13명*<u>12월</u> = 28,080천 원
민원업무수당	· 50,000원*2명*<u>12월</u> = 1,200천 원
중요직무급	· 4급상당 200,000원*2명*<u>12월</u> = 4,800천 원 · 5급상당 150,000원*4명*<u>12월</u> = 7,200천 원 · 6급상당 150,000원*4명*<u>12월</u> = 7,200천 원 · 7급상당 150,000원*5명*<u>12월</u> = 9,000천 원

□ 이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³⁾, 위원회 활동기한이 최소 3개월 연장될 것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함⁴⁾.

□ 그러나, 종합보고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 조사위원회의 별도의 의결로써 활동기한을 연장해야하므로, 법률 상 위원회의 활동기한의 연장은 의결을 전제로 구체화되며, 의결이

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6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참고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조사개시 후 3년(2021. 5.~2024. 5.)으로 원칙적인 활동기간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그 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음.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26년 6월 16일까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원칙적인 위원회 활동 기한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이태원참사 진상규명(1131-310)

- 내역사업 ‘국외조사’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이 2026년 6월 1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내에 국외조사를 완료하여 종합보고서 작성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이태원참사 3주기 계기 방한한 희생자 유가족 대상 조사(2025.10.27.)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 대상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등 국외조사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2026년에 직접 방문을 통해 수행할 국외조사 대상 국가 및 인원 수의 감소 및 이에 따른 국외여비 예산의 감액이 필요함.

가. 개 요

-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사업은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11억 6,100만원 대비 6억 9,200만원이 증액된 18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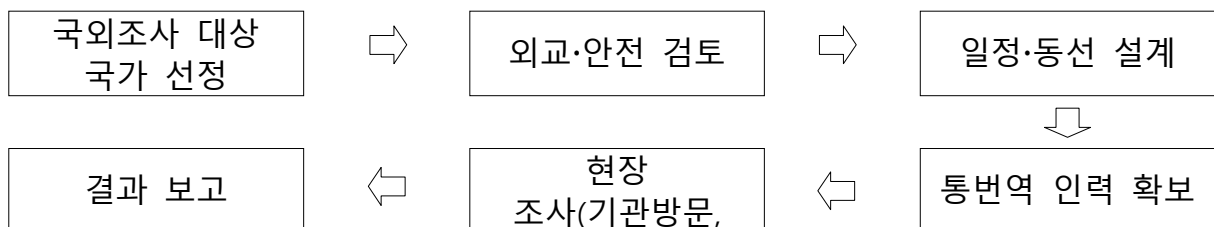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예비비(A)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1,161	1,853	692	59.6
국내조사	741	883	142	19.2
국외조사	150	250	100	66.7
연구용역	200	200	130	185.7
종합보고서 발간	70	520	320	160.0

※ 2025년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됨(2025. 1.15.).

나. 국외조사 계획 재검토를 통한 국외여비 예산 감액 필요

- 내역사업 ‘국외조사’는 외국인 희생자 및 피해자 조사를 위한 외국인 유가족 등 신청인·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보다 1억원 증액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외조사 사업 추진 절차]



(자료: 특별조사위원회)

- 특별조사위원회는 외국인 희생자의 국적국, 유가족 실제 거주국, 핵심증거 소재국을 최우선적으로 방문·면담·자료확보 등을 추진해야 할 14개국을 조사 필수국으로 분류하였고, 총 24개국 74명을 국외조사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음.

[특별조사위원회의 국외조사 대상]

국 가	희생자	피해자 (생존자·유가족)	합계
계	26	48	74
노르웨이	1	1	2
독일	0	1	1
러시아	4	1	5
말레이시아	0	1	1
멕시코	0	2	2
모로코	0	1	1
몽골	0	1	1
미국	2	4	6
베트남	1	1	2
스리랑카	1	0	1
영국	0	1	1
오스트리아	1	0	1
우즈베키스탄	1	3	4
이란	5	3	8
인도	0	1	1
인도네시아	0	1	1
일본	2	1	3
중국	4	8	12
카자흐스탄	1	0	1
캐나다	0	1	1
태국	1	1	2
파키스탄	0	2	2
프랑스	1	3	4
호주	1	0	1
국적 미확인	0	10	0

(자료: 특별조사위원회)

※ : 조사 필수국(14개국)

- 구체적인 시기별로 조사 계획을 살펴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년 3~4분기에 걸쳐 희생자 5개국(10명), 피해자 10개국(21명)에 대해 국외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에는 1~2분기에 걸쳐 희생자 9개국(16명), 피해자 10개국(27명)에 대해 국외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임.

[특별조사위원회의 국외조사 계획]

연도	희생자		피해자(생존자·유가족)	
	국가 수	조사대상인원 수	국가 수	조사대상인원 수
2025년	5개국	10명	10개국	21명
2026년	9개국	16명	10개국	27명

(자료: 특별조사위원회)

- 위와 같은 계획은 2025년 6월 17일 특별조사위원회가 최초 조사 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2025년에는 3~4분기에 국외조사를 추진하고, 2026년에는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최초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1년인 2026년 6월 16일에 종료됨에 따라 1~2분기에 국외조사를 추진하는 일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⁵⁾.
- 그런데, 특별조사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희생자 1개국(스리랑카, 1명), 피해자 1개국(파키스탄, 1명)에 대한 방문을 통해 국외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10월 27일에는 이태원참사 3주기

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계기로 방한한 9개국의 희생자 유가족 35명을 대상으로 녹취를 통한 진술 확보 등 국외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2025년 특별조사위원회 국외조사 추진 현황]

조사 기간	국가 (인원)	주요 조사 활동 및 실적
'25. 8. 25. ~ '25. 8. 28.	스리랑카 (1명)	스리랑카 희생자 부친 및 배우자 진술조사와 희생자의 장례식을 진행한 종교지도자 면담 진행(희생자의 한국 체류 및 근무경력, 참사 발생 전후 행적, 사망 이후 처리 및 유가족 상황 등 확인)
'25. 8. 29. ~ '25. 8. 30.	파키스탄 (1명)	이태원참사 외국인 구조참여자 진술조사 진행(참사 당일 행적, 구조활동 참여 경위 및 내용, 구조활동 참여 영향 및 지원 상황 확인)
'25. 10. 27.	이란, 프랑스, 우즈베크, 노르웨이, 러시아, 중국, 호주, 카자흐스탄, 일본 (35명)	희생자 사망 경위, 우리 정부 대응, 외국인 유가족 지원체계 문제점, 제도개선 의견 진술 확보

(자료: 특별조사위원회)

□ 따라서, 2025년의 경우 계획한 피해자(생존자·유가족) 조사대상 인원 수 21명보다 많은 인원에 대해 국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조사위원회의 2026년 국외조사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내에 국외조사를 완료하여 종합 보고서 작성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이태원참사 3주기 계기 방한한 희생자 유가족 대상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 대상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2026년에 직접 방문을 통해 수행할 국외조사 대상 국가 및 인원 수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필수국으로 선정한 14개국과 관련하여 현재 특별조사위원회는 노르웨이·태국·베트남·스리랑카 등 4개국의 대한민국 대사관과 협력 중에 있다고 밝혔으나, 공문 수·발신 등 형식적인 협조 관계 구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외공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직접 해당 국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국외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종합보고서에 조사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별조사위원회-국외조사 필수국 재외공관과의 업무 협조 현황]

국 가	희생자	피해자 (생존자·유가족)	업무 협조 여부	업무 협조 내용
노르웨이	1	1	O	공문 수·발신 1건
러시아	4	1	X	
미국	2	4	X	
베트남	1	1	O	공문 수·발신 1건
스리랑카	1	0	O	공문 수·발신 3건 회의(면담) 1건
오스트리아	1	0	X	
우즈베키스탄	1	3	X	
이란	5	3	X	
일본	2	1	X	
중국	4	8	X	
카자흐스탄	1	0	X	
태국	1	1	O	공문 수·발신 1건
프랑스	1	3	X	
호주	1	0	X	

(자료: 특별조사위원회)

- 특별조사위원회에는 2026년 예산안에 국외조사 수행을 위한 국외
여비(220-02)를 2025년 예산 1억 600만원 대비 1억원 증액하여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5년의 국외조사 추진 현황을
반영하여 실제 방문을 통한 조사가 필요한 국가 및 인원을 재선
정하고, 방문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만 국외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3. 안전사회 구현(1131-320)

-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및 종합보고서 작성 일정을 고려할 때, 내역사업 ‘재난안전 조사 및 연구’와 ‘피해자 권리침해 조사 및 연구’에 각각 편성하고 있는 일반연구비의 집행 가능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연구용역 추진 현황 및 계획을 각각 재검토함으로써 연구용역 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내실 있는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해 2025년 예산을 활용한 연구용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내에 연구용역의 결과가 직권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6년 연구용역 관련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안전사회 구현’ 사업은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 조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재난안전 확보 및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2억 9,300만원이 편성됨.

[안전사회 구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예비비			
안전사회 구현	286	293	7	2.4
재난안전 조사 및 연구	78	162	84	107.7
피해자 권리침해 조사 및 연구	208	131	△77	△37.0

※ 2025년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됨(2025. 1.15.).

나. 연구용역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및 내실화 도모 필요

- 내역사업 ‘재난안전 조사 및 연구’와 ‘피해자 권리침해 조사 및 연구’는 예산의 일정 부분을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하여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집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 ‘재난안전 조사 및 연구’ 사업은 2025년 예산과 동일하게 7,500만원을, ‘피해자 권리침해 조사 및 연구’ 사업에는 2025년 예산 1억 2,500만원 대비 7,5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일반연구비로 편성하였음.

[안전사회 구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예비비			
재난안전 조사 및 연구	78	162	84	107.7
일반연구비(260-01)	75	75	-	-
피해자 권리침해 조사 및 연구	208	131	△77	△37.0
일반연구비(260-01)	125	50	△75	△60.0

※ 2025년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됨(2025. 1.15.).

- 2025년 동 내역사업별 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연구용역 과제는 4건인데, 용역 발주가 이루어진 건수는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3건은 아직 발주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등 연구용역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2025년 내역사업 ‘재난안전 조사 및 연구’ 연구용역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용역명	용역 발주일	계약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1	국내·외 다중인파 사고 사례조사	9.22	25.10~12월 (계약체결 중)	22
2	재난컨트롤타워 개선 방안	-	25.10~12월 (용역준비 중)	22
3	다중운집인파관리 관련 해외 선진 법·제도의 국내 적용 방안 연구	-	25.10~12월 (용역준비 중)	22

(자료: 특별조사위원회) ※ 2025. 10. 1. 기준

[2025년 내역사업 ‘피해자 권리침해 조사 및 연구’ 연구용역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용역명	용역 발주일	계약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침해 실태 및 구제 방안 연구	-	25.11월~26.5월 (용역준비 중)	125

(자료: 특별조사위원회) ※ 2025. 10. 1. 기준

□ 특별조사위원회는 2026년에도 동 내역사업들을 통해 총 5건의 연구용역 과제를 추진할 예정인데,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6년 1월에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4~5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일정을 예상하고 있음.

[2026년 내역사업 ‘재난안전 조사 및 연구’ 연구용역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연 번	용역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1	안전문화 대책 수립 관련	26. 1~4월	25
2	재난응급의료체계의 조사·분석·개선 연구	26. 1~4월	25
3	재난관리정보체계 구축·운영 현황 조사·분석·개선 연구	26. 1~4월	25

(자료: 특별조사위원회)

[2026년 내역사업 ‘피해자 권리침해 조사 및 연구’ 연구용역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연 번	용역명	연구기간	계약금액
1	대규모 재난 시 공공과 민간의 정신건강 대응 체계 연구	26. 1~5월	25
2	재난 희생자의 사회적 기억 및 추모를 위한 국가·국제적 차원의 추모사례 연구	26. 1~4월	25

(자료: 특별조사위원회)

□ 그러나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이 2026년 6월까지이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한이 3개월 연장되더라도 연구용역 발주 후 유찰 가능성과 연구 주제의 광범위성 등을 고려하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연구가 완료되어 종합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임.

□ 또한, 동 내역사업들을 통해 추진되는 연구용역과제의 내용은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의 적정성 점검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피해자 권리침해 실태 등에 대한 연구로서 특별조사위원회 안전 사회국의 8개 직권조사 사항들과 연계된 것이므로, 연구용역 추진 일정에 따라 조사 완료 시점도 유동적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

[특별조사위원회(안전사회국) 직권조사 사항]

구분(안)	조사과제 제목	주요 내용
직나-1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조사	인파관리대책, 관련 안전 교육 및 홍보, 인프라 구축·운영 등
직나-2	다중운집 안전관리 매뉴얼·훈련 등 재난 대비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조사	재난 대응 매뉴얼, 재난안전통신망, 재난대비훈련 등
직나-3	재난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조사	재난 지휘·보고체계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 등
직나-4	국내·외 다중운집 인파 사고 및 안전 관리 사례 조사	인파 사고 사례, 국내·외 재난 안전관리 선진 사례 조사 등
직나-5	이태원참사 희생자구조·병원이송·가족 인도 등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재난 희생자 관련 사망신고 제도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등
직나-6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침해 실태 및 구제 방안 조사	심리적·경제적·법적·사회적 피해 및 외국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방안 등
직나-7	국가의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조사	정부·지자체 재난 피해자 지원제도 분석, 국내·외 사례, 지원체계 방안 등
직나-8	이태원참사 희생자 등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추모 방안 조사	국가 차원의 추모공간·조형물 조성, 추모행사제도의 필요성 등

(자료: 특별조사위원회)

□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는 연구용역 추진 현황 및 계획을 각각 재검토함으로써 연구용역 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내실 있는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해 2025년 예산을 활용한 연구용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내에 연구용역의 결과가

직권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6년 연구
용역 관련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4. 기관운영(총액)(7002-200)

-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에 대해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250-03)와 관련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유사 위원회의 사례를 고려할 때, 정부안 대비 조사 인원 1인당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증액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가. 개 요

- ‘기관운영(총액)’ 사업은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대비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14억 2,100만원이 편성됨.

[기관운영(총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예비비			
기관운영(총액)	1,240	1,421	181	14.6

※ 2025년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됨(2025. 1.15.).

나. 1인당 특정업무경비 지급단가 현실화를 위한 증액 필요

- 특정업무경비(250-03)는 조사·연구·단속·감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서, 편성된 범위 내에서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하는 비목임.

-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초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조사 관련 인원 66명 (별정직 45명, 파견직 16명, 전문위원 5명)을 기준으로 총 9개월간 1인당 150,000원을 월마다 지급할 계획으로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는 1인당 75,000원으로 반영되었음.

[특정업무경비(250-03) 부처요구액 및 정부안 반영액]

(단위: 천원)

부처요구액		정부안 반영액	
산출근거	총액	산출근거	총액
· <u>150,000원</u> ×66명×9월	89,100	· <u>75,000원</u> ×66명×9월	44,550

(자료 : 특별조사위원회)

-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유사한 위원회에서 조사 관련 인원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사례를 살펴보면, 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보다 1인당 지급단가가 더 높게 반영된 바 있음.

[조사 관련 인원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 집행 사례]

(단위: 천원)

연 도	부 처	산출근거	금액
2023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140,000원×60명×12월	100,800
202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회	· 150,000원×110명×11월	181,500

(자료 : 특별조사위원회)

□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이 참사로 인한 국·내외 유가족 및 피해자로 다양하고, 영상분석 및 면담 등의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수당의 개념으로 특정업무경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2025년 6월 17일 첫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조사개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 235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어 조사관(66명) 1인당 평균 약 3.6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추가적인 조사개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개시 현황]

(단위: 건)

구 분	신청사건	직권사건	합계
진상규명조사국	100	127	227
안전사회국	-	8	8

(자료 : 특별조사위원회) ※ 2025. 8.26. 기준

□ 위와 관련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유사 위원회의 사례를 참조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관련 인원들의 조사업무 수행의 편의를 제고하고 난이도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1인당 지급단가의 현실화를 위한 특정업무경비의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